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634
----------	-------

발의연월일 : 2026. 4. 27.

발 의 자 : 박수현·조계원·박홍배
정태호·문진석·서삼석
박용갑·윤준병·조인철
양부남·허영·이개호
김기표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력 수급의 안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지원금의 결정기준만을 규정하고 있고, 지원단가 조정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사회·경제적 여건을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움.

따라서 주변지역 주민 등으로부터 지원금 현실화 등의 조정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지원금의 결정 기준을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3년마다 재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들과 지역사회 발전에 현실적이고 합당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법률 제 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성격 등을 고려하여”를 “성격,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3년마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재원과 지원금의 결정) ① ~ ③ (생 략)</p> <p>④ 지원금의 결정기준은 송·변 전설비와 주변지역의 특성, 지 원사업의 종류 및 <u>성격 등을 고</u> <u>려하여</u>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0조(재원과 지원금의 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u>성격, 사회·</u> <u>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3</u> <u>년마다</u> -----.</p>